

# 변경 대비표

## 1. 펀드명

변경전)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투자신탁[주식]

변경후) 하나UBS 그레이트코리아증권투자신탁[주식]

## 2. 주요 변경내용

- 펀드명(모투자신탁 포함) 변경
- BM변경
-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BM 변경
- 환매수수료 삭제
- 종류 A-E, C-P, C-P2, C-PE, C-P2E, S 수익증권 추가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5월 11일

## 4. 대비표

### [ 집합투자규약 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펀드명	하나UBS <u>First Class에이스</u> 증권투자신탁[주식]	하나UBS <u>그레이트코리아</u> 증권투자신탁[주식]
제3조(집합 투자기구 의 및 종류 명칭 등)	<p>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투자신탁[주식]"으로 한다.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추가&gt;</p>	<p>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 하나UBS <u>그레이트코리아</u>증권투자신탁[주식]"으로 한다.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UBS <u>그레이트코리아</u>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. <u>종류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 12. <u>종류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</u></p>

		<p>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13. <u>종류 C-P2 수익증권</u>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</p> <p>14. <u>종류 C-PE 수익증권</u>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15. <u>종류 C-P2E 수익증권</u>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p> <p>18. <u>종류 S 수익증권</u>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	<p>제1항 &lt;추가&gt;</p>	<p>제1항</p> <p>2. <u>종류 A-E 수익증권</u></p> <p>11. <u>종류 C-P 수익증권</u></p> <p>12. <u>종류 C-P2 수익증권</u></p> <p>13. <u>종류 C-PE 수익증권</u></p> <p>14. <u>종류 C-P2E 수익증권</u></p> <p>18. <u>종류 S 수익증권</u></p>
<p><b>제39조(보수)</b></p>	<p>제3항 &lt;추가&gt;</p>	<p>제3항</p> <p>[<u>종류A-E 수익증권</u>]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34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</u></p>

		<p><u>[종류C-P 수익증권]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25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</u></p> <p><u>[종류C-P2 수익증권]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25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</u></p> <p><u>[종류C-PE 수익증권]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13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</u></p> <p><u>[종류C-P2E 수익증권]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63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</u></p> <p><u>[종류S 수익증권]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46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0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</u></p>
--	--	--

<p><b>제40조(판매수수료)</b></p>	<p>제2항 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 1. 종류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0% 이내  2. 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</p> <p>제4항 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 1. 종류 B 수익증권 : 2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% 이내</p>	<p><u>1000분의 0.18</u></p> <p>제2항 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 1. 종류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0% 이내  <u>2. 종류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</u>  3. 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</p> <p>제4항 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 1. 종류 B 수익증권 : 2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% 이내  <u>2. 종류 S 수익증권 :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이내</u></p>
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</b></p>	<p>①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	<p><u>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

	<p>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"이익금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삭제>

[ 간이투자설명서 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펀드명	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하나UBS <u>그레이트코리아</u>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보수	환매수수료 : 90일미만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: <u>없음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<p>[1] 투자전략</p> <p>1. 투자목적</p> <p>(2) 투자대상</p> <p>[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]</p> <p>모투자신탁명 :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(3) 비교지수 : KOSPI 수익률 X 100%</p> <p>※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X 100%를</p>	<p>[1] 투자전략</p> <p>1. 투자목적</p> <p>(2) 투자대상</p> <p>[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]</p> <p>모투자신탁명 : 하나UBS <u>그레이트코리아</u>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(3) 비교지수 : <u>KRX300지수 * 100%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KRX300 지수</b>  <a href="#">한국거래소에서 2018년 02월 05일 발표한 지수로서, 305개 종목(코스피</a></p> </div>

	<p>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</p>	<p><a href="#">237개 종목 + 코스닥 68개 종목</a>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 (단, 2018년 6월 정기변경부터는 300개 종목으로 조정될 예정)</p> <p>※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<b>KRX300 지수 * 100%</b>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</p> <p>※ <a href="#">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,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</a></p>
<p><b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b></p>	<p><b>2. 투자전략</b>  <b>[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]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-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이익 추구  - 단,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<input type="checkbox"/> Bottom-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- Bottom-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-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<input type="checkbox"/>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- In -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</p>	<p><b>2. 투자전략</b>  <b>[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]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<a href="#">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주식에 투자</a>  - <a href="#">배당확대, 지배구조 개선, 주주환원 정책 개선 등으로 투자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</a>  - <a href="#">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따라 re-rating이 예상되는 저평가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</a>  <input type="checkbox"/> <a href="#">정세변화에 따라 국면별 수혜 업종주 및 업종별 대표주를 발굴하여 초과 성과 추구</a>  - <a href="#">단기 모멘텀에 따른 투자를 지양하며,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인 투자</a>  - <a href="#">국면별 운용(매매)를 통해 초과 성과 추구</a>  <input type="checkbox"/>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</p>

		최소화 추구 - In -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
<b>II.</b> <b>집합투자기</b> <b>구의</b> <b>투자정보</b>	<b>3. 운용전문인력</b> (생략)  <b>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</b> 주1) 비교지수 : KOSPI 수익률 X 100%	<b>3. 운용전문인력</b> (업데이트)  <b>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</b> 주1) 비교지수 : <u>KRX300지수 * 100%</u> <u>상기의 비교지수는 2018년 05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. 최초설정일부터 2018년 05월 10일까지의 비교지수는 (KOSPI 수익률 X 100%)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/u>

[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													
<b>제 1 부</b> <b>모집 또는</b> <b>매출에</b> <b>관한 사항</b>	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<추가>	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 하나 UBS <a href="#">그레이트코리아</a>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h> <th>펀드 코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-E</td> <td>C9051</td> </tr> <tr> <td>C-P</td> <td>C9052</td> </tr> <tr> <td>C-P2</td> <td>C9053</td> </tr> <tr> <td>C-PE</td> <td>C9054</td> </tr> <tr> <td>C-P2E</td> <td>C9055</td> </tr> <tr> <td>S</td> <td>C905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펀드 코드	A-E	C9051	C-P	C9052	C-P2	C9053	C-PE	C9054	C-P2E	C9055	S	C9056
	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펀드 코드													
		A-E	C9051													
		C-P	C9052													
		C-P2	C9053													
		C-PE	C9054													
		C-P2E	C9055													
S	C9056															
<b>제 2 부</b> <b>집합투자</b> <b>기구에</b> <b>관한 사항</b>	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<추가>	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 하나 UBS <a href="#">그레이트코리아</a>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h> <th>펀드 코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-E</td> <td>C9051</td> </tr> <tr> <td>C-P</td> <td>C9052</td> </tr> <tr> <td>C-P2</td> <td>C905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펀드 코드	A-E	C9051	C-P	C9052	C-P2	C9053						
	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펀드 코드													
		A-E	C9051													
C-P	C9052															
C-P2	C9053															

		C-PE	C9054										
		C-P2E	C9055										
		S	C9056		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<b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b> 2018년 05월 11일 - 펀드명(모투자신탁 포함) 변경 - BM변경 -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BM 변경 - 환매수수료 삭제 - 종류 A-E, C-P, C-P2, C-PE, C-P2E, S 수익증권 추가											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생략)	<b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b> (업데이트)											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<b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b> <b>나. 종류형 구조.</b>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 신탁[주식] <추가>	<b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b> <b>나. 종류형 구조</b> 하나 UBS <a href="#">그레이터코리아</a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종류 A-E</td> <td><a href="#"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(On-line) 전용 수익증권</a></td> </tr> <tr> <td>종류 C-P</td> <td><a href="#"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</a></td> </tr> <tr> <td>종류 C-P2</td> <td><a href="#"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 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 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 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a></td> </tr> <tr> <td>종류 C-PE</td> <td>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 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 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</a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가입자격	종류 A-E	<a href="#"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(On-line) 전용 수익증권</a>	종류 C-P	<a href="#"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</a>	종류 C-P2	<a href="#"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 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 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 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a>	종류 C-PE	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 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 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</a>
구분	가입자격												
종류 A-E	<a href="#"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(On-line) 전용 수익증권</a>												
종류 C-P	<a href="#"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</a>												
종류 C-P2	<a href="#"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 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 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 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a>												
종류 C-PE	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 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 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</a>												

	<p><b>다. 모자형 구조</b> 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  신탁[주식]</p> <p><b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 관한 사항]</b>  <b>모투자신탁명</b> 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  신탁[주식]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884 185 997 427"></td> <td data-bbox="997 185 1396 427"> <u>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 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 권</u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84 427 997 719"> <b>종류</b>  C-P2E </td> <td data-bbox="997 427 1396 719"> 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  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 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  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 계좌를 개설한 자</u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84 719 997 1055"> <b>종류</b>  S </td> <td data-bbox="997 719 1396 1055">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 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 </td> </tr> </table> <p><b>다. 모자형 구조</b>  하나 UBS <a href="#">그레이트코리아</a>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<b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 관한 사항]</b>  <b>모투자신탁명</b>  하나 UBS <a href="#">그레이트코리아</a>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		<u>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 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 권</u>	<b>종류</b> C-P2E	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  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 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  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 계좌를 개설한 자</u>	<b>종류</b> S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 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
	<u>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 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 권</u>							
<b>종류</b> C-P2E	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  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 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  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 계좌를 개설한 자</u>							
<b>종류</b> S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 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							
<b>제2부  집합투자  기구에 관  한 사항</b>	<p><b>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  자집합투자기구  가. 투자대상 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  신탁[주식]</p>	<p><b>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  자집합투자기구  가. 투자대상  하나 UBS <a href="#">그레이트코리아</a>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p>						
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[모집합투자기구] 별첨 1 참조	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[모집합투자기구] 별첨 1 참조														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	11. 매입, 환매 전환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추가>	11. 매입, 환매 전환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95 521 1382 196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895 521 999 573">구분</th> <th data-bbox="999 521 1382 573"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895 573 999 719">종류 A-E</td> <td data-bbox="999 573 1382 719"><a href="#"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(On-line) 전용 수익증권</a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95 719 999 1010">종류 C-P</td> <td data-bbox="999 719 1382 1010"><a href="#"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95 1010 999 1245">종류 C-P2</td> <td data-bbox="999 1010 1382 1245"><a href="#"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a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95 1245 999 1626">종류 C-PE</td> <td data-bbox="999 1245 1382 1626">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95 1626 999 1917">종류 C-P2E</td> <td data-bbox="999 1626 1382 1917">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a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95 1917 999 1966">종류</td> <td data-bbox="999 1917 1382 1966"><a href="#"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</a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가입자격	종류 A-E	<a href="#"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(On-line) 전용 수익증권</a>	종류 C-P	<a href="#"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	종류 C-P2	<a href="#"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a>	종류 C-PE	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	종류 C-P2E	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a>	종류	<a href="#"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</a>
구분	가입자격															
종류 A-E	<a href="#"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(On-line) 전용 수익증권</a>															
종류 C-P	<a href="#"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															
종류 C-P2	<a href="#"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a>															
종류 C-PE	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															
종류 C-P2E	<a href="#"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a>															
종류	<a href="#"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</a>															

	<p>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,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. 단,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. 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※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96 192 1385 481"> <tr> <td data-bbox="896 192 997 481">S</td> <td data-bbox="997 192 1385 481"> <p><u>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</p> </td> </tr> </table> <p>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 <u>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u></p>	S	<p><u>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</p>
S	<p><u>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</p>			
<p><b>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</b></p>	<p><b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: 90일미만 이익금의 70%  (추가)</p> <p>* 판매회사는 종류B 수익증권을 판매하</p>	<p><b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p> <p><u>종류 A-E</u> <u>선취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의 0.50% 이</u> <u>내</u> <u>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</p> <p><u>종류 C-P, C-P2, C-PE, C-P2E</u> <u>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 <u>후취판매수수료: 없음</u></p> <p><u>종류 S</u> <u>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 <u>후취판매수수료 : 3년미만 환매시 환매</u> <u>금액의 0.15% 이내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		

는 경우,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단, 90일 미만 투자로 인해 환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가 먼저 적용된 뒤에 환매수수료가 징구됩니다.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
(추가)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
(추가)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	
	A-E	C-P	C-P2	C-PE	C-P2E	S
집합투자업자 보수	<u>0.714</u> 6%	<u>0.714</u> 6%	<u>0.714</u> 6%	<u>0.714</u> 6%	<u>0.714</u> 6%	<u>0.714</u> 6%
판매회사 보수	<u>0.334</u> 0%	<u>0.825</u> 0%	<u>0.725</u> 0%	<u>0.413</u> 0%	<u>0.363</u> 0%	<u>0.400</u> 0%
신탁업자 보수	<u>0.050</u> 0%	<u>0.050</u> 0%	<u>0.050</u> 0%	<u>0.050</u> 0%	<u>0.050</u> 0%	<u>0.050</u> 0%
일반사무관리 보수	<u>0.018</u> 0%	<u>0.018</u> 0%	<u>0.018</u> 0%	<u>0.018</u> 0%	<u>0.018</u> 0%	<u>0.018</u> 0%
보수합계	<u>1.116</u> 6%	<u>1.607</u> 6%	<u>1.507</u> 6%	<u>1.195</u> 6%	<u>1.145</u> 6%	<u>1.182</u> 6%
기타비용 <sup>주1)</sup>	-	-	-	-	-	-
총보수 및비용 <sup>주2)</sup>	<u>1.116</u> 6%	<u>1.607</u> 6%	<u>1.507</u> 6%	<u>1.195</u> 6%	<u>1.145</u> 6%	<u>1.182</u> 6%
증권거래비용 <sup>주3)</sup>	-	-	-	-	-	-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구분	1년차	3년차	5년차	10년차
----	-----	-----	-----	------

		<u>A-E</u>	<u>164</u>	<u>411</u>	<u>682</u>	<u>1,489</u>
		<u>C-P</u>	<u>165</u>	<u>519</u>	<u>910</u>	<u>2,072</u>
		<u>C-P2</u>	<u>155</u>	<u>487</u>	<u>854</u>	<u>1,943</u>
		<u>C-PE</u>	<u>123</u>	<u>386</u>	<u>677</u>	<u>1,541</u>
		<u>C-P2E</u>	<u>117</u>	<u>370</u>	<u>649</u>	<u>1,477</u>
		<u>S</u>	<u>121</u>	<u>382</u>	<u>670</u>	<u>1,524</u>
제3부 집 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 적 등에 관한 사항	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 1) 비교지수 : KOSPI 수익률 X 100%	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) 비교지수 : <u>KRX300지수 * 100%</u> <u>상기의 비교지수는 2018 년 05 월</u> <u>11 일부터 적용됩니다. 최초설정일부터</u> <u>2018 년 05 월 10 일까지의 비교지수는</u> <u>(KOSPI 수익률 X 100%)를 기준으로</u> <u>작성되었습니다.</u>				
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 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				

<별첨 1>  
(변경 전)

[모집합투자기구]

(1) 운용전략

-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
  -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
  - 단,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
- Bottom-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
  - Bottom-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
  -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 매매도 병행
-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
  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
  - In -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

(2) 비교지수(Benchmark) : **KOSPI 수익률 X 100%**

- 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**KOSPI 수익률 X 100%**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
- 주 2)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(변경 후)

[모집합투자기구]

(1) 운용전략

-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주식에 투자
  - 배당확대, 지배구조 개선, 주주환원 정책 개선 등으로 투자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
  -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따라 re-rating이 예상되는 저평가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
- 정세변화에 따라 국면별 수혜 업종주 및 업종별 대표주를 발굴하여 초과 성과 추구
  - 단기 모멘텀에 따른 투자를 지양하며,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인 투자
  - 국면별 운용(매매)를 통해 초과 성과 추구

-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
  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
  - In -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

- "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주식에 투자"
- 단기 모멘텀 투자가 아닌 장기 관점에서 접근

- "단기 모멘텀에 따른 투자를 자제하며,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투자"
- 국면별 운용(매매)을 통해 초과성과 추구

## 저평가 주식 + 수혜주

※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.

(2) 비교지수(Benchmark) : KRX300지수 \* 100%

### KRX300 지수

한국거래소에서 2018년 02월 05일 발표한 지수로서, 305개 종목(코스피 237개 종목 + 코스닥 68개 종목)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 (단, 2018년 6월 정기변경부터는 300개 종목으로 조정될 예정)

주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RX300지수 \* 100%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

주 2)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주 3)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,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 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